

# 미국 코카콜라의 중국 후이웬 인수금지에 대한 소고

## I. 머리말

중화민주공화국 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 이하 “상무부”)는 반독점법(反垄断法)의 시행을 전후하여 경영자집중(经营者集中, 기업결합)에 대한 반독점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기존의 담당조직을 확대하여 ‘반독점국(反垄断局)’을 신설<sup>1)</sup>하였고, 내부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국제교류 및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총 5가지의 경영자집중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sup>2)</sup>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획정에 대한 지침[关于相关市场界定的指南(草案)]」 등 6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수렴을 거친 후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자합병규정의 법률책임 미비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sup>3)</sup>해 왔던 경영자집중에 대한 반독점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독점법을 시행한

\* 중국인민대학(中国农业大学) 법학박사(경제법 전공)

- 1) 「상무부 주요직책·내부기구 및 인원편제규정(商务部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 '08.7.11)」에 의거, 기존의 반독점조사실(反垄断调查办公室)을 확대 개편하여 반독점국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반독점국은 그 하부조직으로 6개 카[종합처(综合处), 경쟁정책처(竞争政策处), 조사1처(调查一处), 조사2처(调查二处), 법집행감독처(监督执法处), 경제분석처(经济分析处)]를 설치하여 ‘반독점위원회 운영 업무’와 ‘경영자집중에 대한 반독점심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 2) 반독점법 시행 후,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는 경영자집중 관련 규정은 총 5가지로서 「국무원의 경영자집중 신고기준에 대한 규정[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国务院令第529号, 2008.8.3부터 시행)], 이하 “경영자집중 신고기준”이라 함〕, 「경영자집중 반독점심사 업무처리지침[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办事指南(2009.1.1)]」, 「상무부 경영자집중 반독점심사 흐름도[商务部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流程图(2009.1.1)]」, 「경영자집중 신고에 대한 지도의견[关于经营者集中申报的指导意见(2009.1.5)]」, 「경영자집중 신고문서자료에 대한 지도의견[关于经营者集中申报文件资料的指导意见(2009.1.5)]」이 있다.
- 3) ‘외资并购暂行规定’(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暂行规定, 2003.3.7. 제정, 2003.4.12. 시행) 시행 이후의 외자합병에 대한 심사건수는 총 4,966건이며, 그 중 반독점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한 2006년 9월 8일 이후 「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商务部令2006年第10号), 2006.8.8. 제정, 2006.9.8. 시행)」의 반독점심사안건은 590여건(2006년 9월 8일~2008년 7월 30일)이다. 그 중 대부분이 승인(审查通过率很高)되었으나, 미국 Carlyle Group의 서공기계 주식취득 안건(美国凯雷并购(取得股份)徐州工程机械集团案)의 경우에는 경제 애로주의적 국민여론과 중국 기계제조업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적 요인, 국가산업 및 경제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무부는 2007년 3월 조건부 승인(Carlyle Group(凯雷)측의 주식인수비율을 당초 85%에서 45%로 대폭 낮추고, 나머지 55%의 자분을 서주 국유자산감독관위 위원회(徐州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가 소유하는 조건)하였으며, 그 결과 Carlyle Group측에서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재현, 중국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제도 연구-반독점심사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제142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9년 1월” 참조

이후 상무부(商务部)에 접수된 경영자집중 신고안건(申报案件)은 2009년 3월 18일 기준 총 40건이며, 그 중 정식으로 신고수리(立案审查)된 안건은 29건, 심사처리 완료된 안건은 26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09년 4월 24일까지 상무부가 심사처리를 완료한 안건 26건 중에서 승인(无条件批准)된 안건은 23건(88.5%)이나, 조건부 승인(附加限制性条件批准)<sup>4)</sup>이나 금지(禁止)된 안건도 총 3건(11.5%)이나 되어 중국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상무부가 2009년 3월 18일 미국 코카콜라회사의 중국 후이웬회사 인수 안건(美国可口可乐公司收购中国汇源果汁集团有限公司案, 이하 “코카콜라 사례”)에 대해서는 반독점법 시행 후, 최초로 금지 결정을 함으로써 그 배경이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한 상태이며, 해외 언론과 기업들은 이번 결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의 코카콜라 사례는 중국의 경영자집중심사에 있어서 하나의 준거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영자집중 심사절차,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기준, 금지결정사유 및 향후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안건의 개요(案情)<sup>5)</sup>

2008년 9월 3일, 미국의 코카콜라(美国可口可乐公司)는 100% 자회사인 Atlantic Industries를 통해 179.2억 홍콩달러(미화 23억달러)의 가격으로 중국의 후이웬과즙집단유한공사(中国汇源果汁集团有限公司, 简称 “中国汇源公司”)의 모든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sup>6)</sup>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공포하였으며, 2008년 9월 18일 상무부에 경영자집중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코카콜라는 총 4차례(9월 25일, 10월 9일, 10월 16일, 11월 19일)에 걸쳐 상무부의 요구에 따라 신고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11월 20일 코카콜라가 제출한 신고 자료가 반독점법 제23조가 규정된 기준에 부합되었다고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반독점심사를 개시하였으며, 이를 코카콜라에 통지하였다.

한편, 중국의 토종 과일주스음료기업인 후이웬회사(中国汇源公司)는 케이만 아일랜드에 등록된 회사를 통하여 홍콩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토착기업으로 수혜<sup>7)</sup>를 입은 기업으로서 국민 식생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일조하였으며, 생산프로세스의

4) 2009.4.24까지 상무부가 조건부 승인(附加限制性条件批准)한 안건은 ‘比利时英博集团公司(INBEV N.V./ S.A.)收购美国AB公司(ANHEUSER-BUSCH COMPANIES INC.)案, 附加限制性条件批准, 商务部公告 2008年 第95号(2008-11-18)’과 ‘日本三菱丽阳公司收购瑞彩特国际公司案[附加限制性条件批准, 商务部公告 2009年第28号(2009-04-24)]’ 총 2건이다.

5)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09年第22号, 2009.3.18, 商务部<政策发布>部令公告 参照

6) 후이웬(汇源)의 발행자본 및 교환사채를 100%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인수가격은 주당 12.20홍콩달러이고, 이는 후이웬의 2008년 9월 1일 주식시장 주당가격인 4.14홍콩달러의 2.9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특히, 이번 인수는 외국자본의 중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사례이자, 코카콜라의 사상 2번째로 큰 인수사례이다.

통합 운영 및 적극적인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음료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단일 핵심사업(즉, 과일주스음료 중 파일원액 혼합률이 높은 음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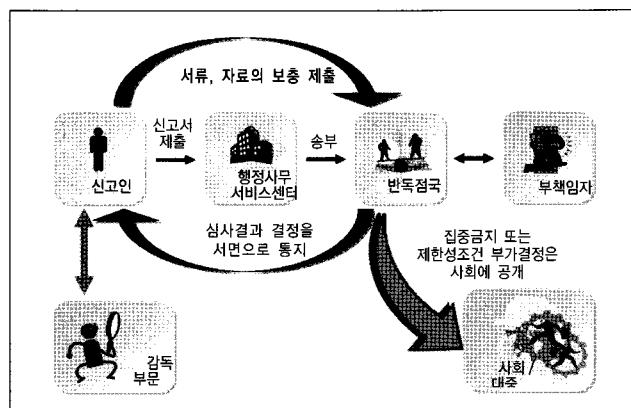
### III. 반독점심사절차(反壟斷審查程序)

#### 1. 심사절차 개관(审查程序概況)<sup>8)</sup>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상무부가 최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경영자집중 반독점심사 업무처리지침(经营者集中反壟斷審查辦事指南, 2009. 1.1)」 및 「상무부 경영자집중 반독점심사 흐름도(商务部经营者集中反壟斷審查流程圖, 2009.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자집중에 대한 반독점심사(行政许可)의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고인 신고(申报方申报) → ② 행정서비스센터(行政服务中心)(경유) → ③ 상무부 반독점국(이송) → ④ 경영자집중 반독점신고 접수증(经营者集中反壟斷申报信息登记表) 발부(또는 반송이나 자료보충 통지) → ⑤ 신고수리(立案审查) → ⑥ 간이심사(初步审查, 30일) → ⑦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 → ⑧ 결정 후, 서면통지 및 즉시 사회공표(단, 금지 또는 조건부승인에 한정)의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경영자집중 반독점심사 절차도



7) 후이웨이는 전국에 30여개의 주스생산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토지무료임대정책(零地价的优惠政策)'의 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합법적인 토지사용증(土地使用证)을 가지고 있으나, 양도(특히, 외국자본이 인수)할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인수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孟昭莉, 可乐黯然告别汇源—中国涉及外资收购的反垄断第一案, 中国三星经济研究院, China Business Focus, 2009. 4. 9.(第09-12号) 参照

## 2. 경영자집중의 신고(经营者集中申报)

경영자가 반독점법 제20조 및 「경영자집중 신고기준(经营者集中申报标准)」이 명시하고 있는 경영자집중 신고요건<sup>9)</sup>에 부합되는 경우, 동법 제21조에 의거 상무부 반독점국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서류는 반독점법 제23조, 「경영자집중 신고에 대한 지도의견[关于经营者集中申报的指导意见(2009.1.5)]」 및 「경영자집중 신고문서자료에 대한 지도의견[关于经营者集中申报文件资料的指导意见(2009.1.5)]」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신고가 수리되어 반독점심사가 진행된다. 코카콜라의 경우에도 4차례의 자료보정을 거쳐 같은 해 11월 20일에야 비로소 신고가 수리되었다.

한편, 신고서에는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계열회사 포함)의 일반현황, 신고사유, 경영자집중의 주요내용(유형, 거래개황 등), 경영자집중이 관련 시장의 경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자료(시장획정 및 관련 시장의 주요현황 포함), 시장진입분석, 효율성 증대 여부 및 그 입증자료, 관련 시장에서의 합작계약 현황, 경영자집중이 시장구조나 소비자·경영자·기술 진보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재무제표 개요, 관련 협회 현황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신고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그 보정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반독점법 제24조에 의거, 미신고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반독점심사(反壟斷审查)

### 가. 간이심사(初步审查)

상무부는 반독점법 제27조(반독점심사 고려요인)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08년 12월 20일 간이심사를 완료한 후, 당해 경영자집중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코카콜라에 통지하였다.

- 8) 반독점심사절차 등 중국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재현, 중국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제도 연구-반독점심사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제142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9년 1월” 참조
- 9) 법정신고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경영자집중의 유형이 ① 합병(合并) ② 주식(股权) 또는 자산취득을 통한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控制权) 취득 ③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경영지배)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규모가 ① 집중(즉,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회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人民币, (한화 약 2조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직전회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모두 4억 위안(한화 약 8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다국적기업 적용기준, 국외의 M&A 포함] ② 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회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한화 약 4,000억 원)을 초과하여, 동시에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직전회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모두 4억 위안(한화 약 8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중국기업 적용기준] ③ 기타 상무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즉, 신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수집한 사실과 증거에 비추어 그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를 구비하거나 구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 나. 중점심사(进一步审查)

상무부는 중점심사과정에서 이 경영자집중이 초래하는 각종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면의견 청취, 논증회(论证会), 좌담회, 공청회(听证会), 실사 또는 위탁조사 및 당사자 상담 등의 방식을 통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 정부부서나 산업협회, 과일주스음료기업, 상류(上游) 과일주스 농축액 공급자, 하류(下游) 과일주스음료 판매자, 경영자집중 당사자, 코카콜라의 중국 합작회사, 경제 및 농업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였다.

이러한 중점심사과정을 거쳐 상무부는 코카콜라의 후이웬의 인수에 대한 반독점심사를 2009년 3월 20일<sup>10)</sup> 전에 완료하였다.

### 4. 심사결정(审查决定) 및 사회공표(社会公布)

상무부는 반독점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이 경영자집중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며, 중국 과일주스음료시장의 효과적인 경쟁 및 과일주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당해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들이 예외인정사유(즉,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공공이익에 부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코카콜라 또한 규정된 기한 내에 경쟁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감소할 수 있는 유효한 해결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 상무부는 2009년 3월 18일 최종적으로 이 경영자집중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금지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였다.

상무부가 발표한 금지결정사유를 종합해 보면, 시장지배력의 전이 가능성, 진입장벽의 증가, 민족브랜드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적 고려 등이 종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1)</sup>

① 이 경영자집중 완료 후, 코카콜라는 그의 탄산 소프트(Soft) 음료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과일주스음료시장에까지 전이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과일주스음료기업에 대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음료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10) 비록 상무부가 심사일수 산정방식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던 반독점심사일수 산정방식은 근무일수(工作日)가 아닌 일력일수(日历日)기준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무부가 이번 경영자집중에 대해 2008년 11월 20일 신고수리를 한 후, 간이심사는 2008년 12월 20일 완료(신고수리 후, 30일)하였으며, 중점심사는 2009년 3월 20일 완료(중점심사 개시 후, 90일)함으로써 각각 일력일수를 기준으로 심사일수를 산정하는 듯 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4월 24일 조건부 승인한 '日本三菱丽阳公司收购路彩特国际公司案[附加限制性条件批准, 商务部公告 2009年第28号 (2009-04-24)]'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유추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11)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09年第22号, 2009.3.18, 商务部政策发布部令公告 参照

② 브랜드는 음료시장의 효과적인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인데, 코카콜라는 이 집중이 완료된 후에 두 개의 유명한(周知) 과일주스 브랜드[즉, ‘美汁源(Minute Maid)’ 및 ‘汇源]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과일주스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현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코카콜라는 탄산음료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의 전이 또는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이용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과일주스 음료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장벽을 현저히 높아지게 할 것이다.

③ 이 경영자집중은 중국 내의 중소형 과일주스 음료기업의 생존공간을 축소시키고, 중국의 과일주스 음료시장에서의 경쟁 참여 및 자주적인 창의능력(즉, 자체 개발능력)을 억제하여 과일주스 음료시장의 효율적인 경쟁구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중국 과일주스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IV. 법률분석(法律分析)

### 1. 신고대상(申报对象) 여부

코카콜라의 자회사가 후이웬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장차 피취득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반독점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영자집중의 유형 중 ‘주식 또는 자산취득을 통한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sup>12)</sup>의 취득(经营者通过取得股权或者资产的方式取得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에 해당되며, 양 당사자의 2007년 중국 내의 매출액(中国境内的营业额)이 각각 91.2억 위안(미화 12억 달러), 25.9억 위안(미화 3.4억 달러)으로서 「경영자집중 신고기준」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규모요건에도 부합되므로 반독점법 제21조에 의한 사전신고대상이다.

### 2. 관련 시장의 확정(相关市场界定)

이 경영자집중과 관련되는 상품시장(相关产品市场)은 주로 무주정음료(无酒精饮料) 중 ‘과일주스음료(果汁类饮料)시장’과 ‘탄산음료(碳酸软饮料)시장’ 두 종류이다. 그 중 ‘과일주스음료(果汁

12) 경영자집중신고 잠정방법 의견 수렴(안)[关于公开征求对《经营者集中申报暂行办法(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 제3조(지배권)에 의하면 “기타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 취득(取得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이란 ① 다른 경영자의 50% 이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② 비록 다른 경영자의 50% 이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 및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하여 1명 이상의 임원 구성과 핵심 관리자의 임명, 재무예산, 경영판매, 가격결정, 중대한 투자 또는 기타 중요한 관리 및 경영상의 정책 등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경우 ③ 둘 또는 둘 이상의 경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로서 경영자집중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类饮料)시장'은 다시 '100% 순 과일주스음료(100%纯果汁)' '농도 26%~99%의 혼합과일주스음료(浓度为26~99%的混合果汁)', '농도 25% 이하의 과일주스음료(浓度在25%以下的果汁饮料)시장'으로 분류<sup>13)</sup>할 수 있지만, 전체 시장 중 과일원액 혼합률이 낮은 음료시장의 비중이 과일원액 혼합률이 높은 음료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상황이다.

상무부는 관련 시장의 획정과정에서 경제학 분석(经济学分析)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과일주스 음료와 탄산음료 간의 대체 가능성(可替代性), 또는 세 종류의 과일주스음료(三种不同浓度果汁饮料) 간의 대체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sup>14)</sup>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련 시장의 분석과정을 거쳐 상무부는 과일주스음료상품과 탄산음료상품 간에는 대체성이 비교적 낮다(替代性较低)는 이유로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판단하였으며, 3종류의 과일주스 음료상품 간에는 매우 높은 수요대체성(需求替代性) 및 공급대체성(供给替代性)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상품시장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과일주스음료시장에서는 양사가 경쟁관계에 있으나, 탄산음료시장에서는 코카콜라만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상무부는 관련 상품시장을 '과일주스음료' 시장으로 획정·발표하였으며, 지역시장은 중국 전체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 3. 경쟁제한성 심사

#### 가. 경쟁제한성 여부

상무부는 중점심사과정에서 경영자집중이 초래하는 각종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경영자집중 당사자, 상·하류(上·下游) 과일주스업체나 경쟁업체, 관련 정부 부서나 산업협회,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서면이나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중점심사 완료 후, 상무부는 반독점법 제27조(반독점심사 고려요인)에 의거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고려요인은 ①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관련 시장 점유율 및 시장에 대한 통제력(즉, 지배력) ②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 ③ 경영자집중이 시장 진입이나 기술 진보에 미치는 영향 ④ 경영자집중이 소비자 및 기타 관련 경영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 ⑤ 경영자집중이 국민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⑥ 브랜드가 과일주스음료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

13) 商务部新闻发言人姚坚就可口可乐公司收购汇源公司反垄断审查决定答记者问, 2009.3.25, 《商务部政策解读》综合商务 参照

14) 현재 의견 수렴 후 내부검토 중인 「관련 시장획정에 대한 지침(关于相关市场界定的指南(草案))」에 의하면, 관련 시장을 상품시장과 지역 시장으로 분류하면서도 상품의 특성에 따른 시간성이나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혁신시장 및 기술시장 등과 관련한 문제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요대체·공급대체분석 및 '가상 독점사업자테스트'를 통하여 관련 상품시장 및 지역시장을 획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상품시장과 지역시장 획정에 필요한 고려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향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요건(推定经营者具有市场支配地位)<sup>15)</sup>’도 하나의 준거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상무부는 고려요인별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영입 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상무부의 기자간담회 내용이나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토대로 고려요인별 경쟁제한성 판단근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 (1)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2007년도 기준 중국 과일주스음료시장은 약 4,000여개의 업체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4대 생산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통일(统一) 21%, 코카콜라 20%, 정신(顶新) 16%, 후이웬 15%를 각각 유지하고 있다. 그 중 코카콜라는 중국내 탄산음료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60.6%(1위)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일주스 음료시장에서는 20%(2위)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후이웬은 과일주스음료시장 전체의 시장점유율은 15%(4위)에 불과하지만, ‘100% 순 과일주스음료’ 시장에서는 46%(1위), ‘농도 26%~99%의 혼합과일주스음료’ 시장에서는 39.8%(1위)<sup>17)</sup>, ‘농도 25% 이하의 과일주스음료’ 시장에서는 10.3%의 시장점유율을 각각 유지하고 있다.<sup>18)</sup>

따라서 경영자집중 완료 후, 코카콜라는 과일주스음료 전체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5%로서 1위 업체가 되며, 2위 업체와의 시장점유율 격차 또한 경영자집중 이전보다 크게 확대(14%)되어, 관련 시장에서 상당히 우세한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번 경영자집중 후 과일주스음료시장에서의 허편달-허쉬만지수(HHI)는 약 1,300 수준에서 약 1,900수준으로 증가하며, 그 증가분이 약 600이므로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sup>19)</sup>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5)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요건(推定经营者具有市场支配地位)은 ① 경영자 1인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2분의 1에 달하는 경우(一个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达到二分之一的) ② 경영자 2인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분의 2에 달하는 경우(两个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合计达到三分之二的) ③ 경영자 3인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분의 3에 달하는 경우(三个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合计达到四分之三的)이며, 다만 ②와 ③의 경우라도 어떤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1/10보다 부족하거나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16)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09年第22号, 2009.03.18, 商务部>政策发布>部令公告 ; 商务部新闻发言人姚坚就可口可乐公司收购汇源公司反垄断审查决定答记者问, 2009.3.25, 商务部>政策解读>综合商务 ; 法学专家纵论可口可乐并购汇源案, 中国人大大学法学院、法制日报周末、德恒律师事务所联合举办的专题研讨会, 2009.3.23, 参照

17) 중국삼성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후이웬은 ‘100% 순과일주스음료’ 및 ‘농도 26%~99%의 혼합과일주스음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각각 43.8%, 42.4%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도 25% 이하의 과일주스음료’ 시장에서는 7.6%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코카콜라가 후이웬을 인수할 경우에는 ‘100% 순과일주스음료’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孟昭莉, “可乐黯然告别汇源—中国涉及外资收购的反垄断第一案”, 中国三星经济研究院, China Business Focus, 2009. 4. 9.(第09-12号) 参照

18) 王晓晖, “Comments on MOFCOM’S Decision involved Coca-Cole & Huiyua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과정 특강자료, 2009.4.27. 참조

## (2) 시장지배력의 전이(市場支配地位傳導) 가능성

일반적으로 혼합결합에서 중시하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제한 가능성 여부는 상호관련성이 높은 품목 간의 결합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업의 지배력이 상대방 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무부는 코카콜라가 탄산음료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60.6%, 1위)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카콜라의 자금력·브랜드가치·관리 및 판매능력 등 여러 방면에서 이미 경쟁상 우세한 지위에 있어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과일주스음료와 탄산음료상품은 비록 상호 간에 대체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비주정음료로서 상호 밀접한 인접시장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집중 후, 코카콜라가 탄산음료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기초로 과일주스음료시장에서도 경쟁상의 우세한 지위 및 영향력을 배가하는 강력한 시너지효과(强強联合的叠加效应)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상무부는 코카콜라가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탄산음료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市場支配地位)를 이용하여 장차 과일음료와 탄산음료를 끼워팔기(搭售) 또는 결합판매(捆绑销售)하거나 배타조건부거래(附加排他性交易条件)를 함으로써 탄산음료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과일주스음료시장으로 전이하게 되어 다른 과일주스음료생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는 이들을 관련 시장에서 퇴출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과일주스음료시장의 경쟁손실을 초래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EU의 경우에도 2001년 7월 GE의 Honeywell 인수에 대하여 GE의 항공엔진과 Honeywell의 항공전자장비가 항공기의 핵심부품으로서, 시장지배력의 상호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sup>20)</sup>한 바 있다.

## (3) 기타 요인

과일주스음료는 일종의 식품으로서 소비회전이 빠르며(快速消费品), 많은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브랜드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지니는 상품의 충성도(品牌的忠诚度)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이 음료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코카콜라의 경우, 대규모의 투자를 통하여 상품에 대한 양호한 이미지를 구

19) 참고로 미국의 「수평결합 가이드라인(1992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1.5 Concentration and Market Shares”은 관련 시장 내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합을 일컫는 HHI(Herfindahl-Hirschman Index)가 결합 후 1,800을 초과하게 되는 고집중 시장에서 결합으로 인한 HHI의 증가폭이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증가폭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을 창출 또는 강화하거나 그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EU는 2001년 7월 'GE의 Honeywell 인수건'에 대해, 항공기제조업체로서는 두 가지 품목을 모두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하나의 제조업체가 두 가지 부문에서 모두 상당한 독과점적 지위를 보유한 채 공급하게 된다면, 동 부품 제조업체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결합회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인 다른 항공엔진 및 항공전자장비업체들을 시장에서 축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축하고 있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다. 따라서 상무부는 코카콜라가 경영자집중 후 독자적으로 과일주스음료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美汁源(Minute Maid)’ 및 ‘汇源’ 두 브랜드를 보유하게 될 경우, 과일주스음료시장에서의 지배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상술한 시장지배력 전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를 기화로 코카콜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코카콜라가 민족브랜드인 후이웬을 인수할 경우, 외국자본이 중국의 음료산업을 독점하게 되어 동종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sup>21)</sup>하며, ‘汇源’ 브랜드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반대여론<sup>22)</sup>이 형성된 점도 이번 금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나. 예외인정 여부

반독점법 제28조에 의하면,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구비하거나 구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그 경영자집중에 대한 이익형량의 결과, ‘경쟁에 미치는 유리한 영향이 불리한 영향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부합’되고 경영자가 이를 충분히 입증할 경우에는 금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무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코카콜라는 상술한 예외 인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다. 제한성 부가조건의 상담(商談)

상무부는 심사 중에 발견한 관련 시장의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해소하고자 코카콜라와 제한성 조건부가(附加限制性条件)에 대한 협의(商談)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효한 해결방안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는 상무부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선후로 그 해결방안을 두 차례 제출하였다.

그러나 상무부는 코카콜라가 제출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사한 후, 그 방안이 경영자집중이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1) 상무부가 주최한 비공식 청문회 등에서 관련 업계의 중소기업들은 음료상품의 경우 상품판매 회전률이 높은 업종(快销品行业)이며 박리다  
매로 운영되는 특성이 강하므로 특정업체가 인접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경우, 그의 거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소매유통망을  
장악함으로써 경쟁상대방인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보여 왔다.

22)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닷컴 www.sina.com.cn과 QQ닷컴 www.qq.com이 네이즌을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반대 여론이 각각 82.3%  
와 68.5%를 점유하였다.

## V. 시사점

### 1. 시장지배력의 전이 가능성 중시

상무부의 이번 금지결정을 계기로 경쟁제한성 판단에 필요한 여러 고려요인 중에서 ‘인접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 여부는 앞으로도 경영자집중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으로서 상당한 준거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카콜라의 사례와 같이 동일상품시장이 아닌 특정상품시장(탄산음료)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소비자의 선호도나 대체 가능성 측면에서 유사한 인접시장(과일주스음료)이 존재하며, 당해 경영자집중으로 인하여 그 인접시장에서 상당히 우세한 지위(과일주스음료 시장점유율 35%, 1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는, 그 시장지배력이 인접시장으로 전이되어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즉, 금지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민족브랜드 보호 경향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외자유치확대정책을 채택한 이래 외국자본에 인수된 대보(大宝) 등 ‘민족브랜드’(民族品牌)의 시장영향력 대폭 감소나 퇴출(消失)현상은 ‘외국자본의 민족브랜드 인수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자본이 중국의 민족브랜드를 인수한 사례(案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 자본의 민족브랜드 인수 사례<sup>23)</sup>〉

구 분	인수 내용	인수 결과
2003년 8월	Colgate, 三笑集团 인수	三笑, Colgate의 독자기업으로 전환
2003년 10월	L'Oreal, 小护士 인수	L'Oreal, 기초화장품부문(护肤品领域) 시장점유율 2위 유지
2003년 10월	乐凯와 Kodak의 합자(合资)	코닥의 시장점유율이 50%로 높아지고, 乐凯는 ‘중국유명브랜드(中国名牌)’ 명단에서 퇴출
2004년 4월	AB회사, 青島啤酒의 주식 27% 인수	외국자본이 중국 맥주업체의 3대 선도기업 중 2개사 지분에 참여
2004년 5월	TESCO, 乐购의 주식 50% 인수	외국자본이 소매업계 통제
2006년 12월	Goldman Sachs, 双汇의 주식 61% 인수	Goldman Sachs가 중국의 양대 유명 육류브랜드(双汇和雨润)를 통제
2007년 2월	沃尔玛(월마트), 好又多(Trust-mart)의 주식 35% 인수	월마트, 중국 101개 Trust-mart(好又多超市)를 통제
2007년 3월	존슨앤드존슨, 大宝의 주식 100% 인수	대부분의 민족화장품브랜드 퇴출(民族化妆品基本全军覆没)
2007년 4월	达能(Danon) 40억 위안 출자하여 娃哈哈의 51% 주식 인수	양 사건 상표권 분쟁 발생(达能이 폐소하였으나 상소 예정)

23) 孟昭莉, “可乐黯然告别汇源—中国涉及外资收购的反垄断第一案”, 中国三星经济研究院, China Business Focus, 2009. 4. 9. (第09-12号) 参照

이번 코카콜라 사례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民意调查)에서도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민족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금지결정은 최근 표출되고 있는 외국자본의 민족브랜드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가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족브랜드 보호정책은 외자합병규정(外资并购规定) 시행 이후부터 중국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외자합병정책의 기본방향<sup>24)</sup>이다.

상무부는 이번 금지결정이 반독점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순수한 경쟁법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하고 있으나, 이번 코카콜라 사례는 외국 언론들로부터 '민족브랜드 보호' '보호무역주의 부활' '외국투자에 대한 규제 확대의 신호탄'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향후 외국자본의 중국기업 인수나 중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3. 협의(商談)제도의 중시

상무부는 경영자집중심사의 효율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 전 '사전협의제도(申报前商谈制度)'를 채택<sup>25)</sup>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독점심사 중에 발견한 관련 시장의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해소하는 유효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협의(商談)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경영자집중 당사자가 유효한 해결방안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상무부가 조건부승인(附加限制性条件批准)을 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와 같이 경영자집중 당사자가 제시한 해결방안이 당해 경영자집중이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당해 경영자집중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제도는 외자합병규정 시행 후, 조건부승인 또는 금지결정된 모든 안건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기업이 중국기업을 원활히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4.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의 구체화 필요

상무부는 유감스럽게도 이번 금지결정을 발표하면서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과 관련한 반독점심

24)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합병에 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商务部令 2006第10号, 2006.8.8. 개정)], 통상적으로 '외자합병규정(外资并购规定)'으로 약칭함」은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독점법 시행 후에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고 있으며, 동 규정 제12조는 중국의 유명상표(驰名商标) 또는 전통기업(中华老字号)의 실제자매권 이전을 초래하는 외자합병(즉, 외국 투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무부는 국가경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자합병의 중지, 관련 주식 또는 자산의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이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의적 사전심사청구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중국은 반독점법 시행 이전에도 외자합병신고지침(外资并购申报系统) 제5항에 의거하여 2007년 3월 8일부터 사전협의제도(申报前商谈)를 채택·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경영자집중 신고에 대한 지도의견(关于经营者集中申报的指导意见)」 제1조에 의거하여 2009년 1월 5일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의 고려요인별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자료에 대해 경영자집중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밝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금지결정 발표 후, 상무부의 반독점심사기준이 불명확하고 주요 고려요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코카콜라나 유럽상공회의소(EUCCCK),<sup>26)</sup> 외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반독점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심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의 법제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 [상무부 공고문 (중문)]

当前位置：主页 > 政策发布 > 部令公告 > 正文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 2009年 第22号

2009-03-18 15:04 文章来源：商务部 反垄断局  
文章类型：原创 内容分类：政策

【发布单位】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发布文号】公告2009年第22号

【发布日期】2009-03-18

【实施日期】2009-03-18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收到美国可口可乐公司(简称可口可乐公司)与中国汇源果汁集团有限公司(简称中国汇源公司)<sup>27)</sup>的经营者集中反垄断申报，根据《反垄断法》第三十条，现公告如下：

- 立案和审查过程。2008年9月18日，可口可乐公司向商务部递交了申报材料。9月25日，10月9日，10月16日和11月19日，可口可乐公司根据商务部要求对申报材料进行了补充。11月20日，商务部认为可口可乐公司提交的申报材料达到了《反垄断法》第二十三条规定的标准，对此项申报进行立案审查，并通知了可口可乐公司。由于此项集中规模较大，影响复杂，2008年12月20日，初步阶段审查工作结束后，商务部决定实施进一步审查，书面通知了可口可乐公司。在进一步审查过程中，商务部对集中造成的影响进行了评估，并于2009年3月20日前完成了审查工作。
- 审查内容。根据《反垄断法》第二十七条，商务部从以下几个方面对此项经营者集中进行了全面审查：

26) 유럽상공회의소(EUCCCK)는 33개 사업팀과 포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업체가 1,400여 개 사에 달하는 유럽 최대의 기업연맹이다.

27) 主营果蔬饮料，产品包括纯果汁系列、果蔬汁系列、果汁饮料、乳饮料系列和百利哇系列。

- (一) 参与集中的经营者的市场份额及其对市场的控制力；
- (二) 相关市场的市场集中度；
- (三) 经营者集中对市场进入、技术进步的影响；
- (四) 经营者集中对消费者和其他有关经营者的影响；
- (五) 经营者集中对国民经济发展的影响；
- (六) 汇源品牌对果汁饮料市场竞争产生的影响。

三. 审查工作。立案后，商务部对此项申报依法进行了审查，对申报材料进行了认真核实，对此项申报涉及的重要问题进行了深入分析，并通过书面征求意见，论证会，座谈会，听证会，实地调查、委托调查以及约谈当事人等方式，先后征求了相关政府部门，相关行业协会，果汁饮料企业，上游果汁浓缩汁供应商，下游果汁饮料销售商，集中交易双方，可口可乐公司中方合作伙伴以及相关法律，经济和农业专家等方面意见。

四. 竞争问题。审查工作结束后，商务部依法对此项集中进行了全面评估，确认集中将产生如下不利影响：

1. 集中完成后，可口可乐公司有能力将其在碳酸软饮料市场上的支配地位传导到果汁饮料市场，对现有果汁饮料企业产生排除，限制竞争效果，进而损害饮料消费者的合法权益。
2. 品牌是影响饮料市场有效竞争的关键因素，集中完成后，可口可乐公司通过控制“美汁源”和“汇源”两个知名果汁品牌，对果汁市场控制力将明显增强，加之其在碳酸饮料市场已有的支配地位以及相应的传导效应，集中将使潜在竞争对手进入果汁饮料市场的障碍明显提高。
3. 集中挤压了国内中小型果汁企业生存空间，抑制了国内企业在果汁饮料市场参与竞争和自主创新能力，给中国果汁饮料市场有效竞争格局造成不良影响，不利于中国果汁行业的持续健康发展。

五. 附加限制性条件的商谈。为了减少审查中发现的不利影响，商务部与可口可乐公司就附加限制性条件进行了商谈。商谈中，商务部就审查中发现的问题，要求可口可乐公司提出可行解决方案。可口可乐公司对商务部提出的问题表达自己的看法，并先后提出了初步解决方案及其修改方案。经过评估，商务部认为可口可乐公司针对影响竞争问题提出的救济方案，仍不能有效减少此项集中产生的不利影响。

六. 审查决定。鉴于上述原因，根据《反垄断法》第二十八条和第二十九条，商务部认为，此项经营者集中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将对中国果汁饮料市场有效竞争和果汁产业健康发展产生不利影响。鉴于参与集中的经营者没有提供充足的证据证明集中对竞争产生的有利影响明显大于不利影响或者符合社会公共利益，在规定的时间内，可口可乐公司也没有提出可行的减少不利影响的解决方案，因此，决定禁止此项经营者集中。

本决定自公告之日起生效。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二〇〇九年三月十八日

(信息来源：商务部 反垄断局)

\*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반독점국 경영자집중신고표(한글 및 종문)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홈페이지 [www.kfcf.or.kr](http://www.kfcf.or.kr)의 'SOS 자료' 메뉴 중 '연합회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